

전주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가단2293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익성

피 고 B발전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향

변 론 종 결 2021. 6. 22.

판 결 선 고 2021.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가 2001년경 전주시 완산구 C마을을 포함한 일대를 D(소각시설) 입지로 선정하고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C마을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과 사우나 등 부대시설이 갖춰진 주민편익시설을 건설하기로 하자 2002. 9.경 C마을 주민 41명(총 41가구당 1명)이 소각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한 문제 등 회원들의 복지증진과 마을발전 및 C마을의 공동재산을 정당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다.

나. 전주시는 2006. 9.경 C마을에 소각시설을 준공하고 2007. 3.경 주민편익시설을 준공하였으며, 2010. 7. 27.경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C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E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 위탁하기로 하는 협약(위탁운영에 따른 경비는 협의체가 부담하고 수익금은 협의체의 수입으로 함)을 체결하였다.

다. 당시 피고 발전회 회장이자 협의체의 위원장인 F은 2010. 10. 1.경 협의체로부터 주민편익시설을 재위탁받아 운영할 별도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C마을의 공금 2억 5,000만 원, C마을 주민의 개인 자금 합계 1억 2,000만 원, 외부투자자인 원고의 자금 1억 7,500만 원을 투자받아 자본금 5억 원을 조달하여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완전 동일한 방식으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각 설립하여 F이 위 각 회사들의 대표이사가 되고, 협의체 회원인 I, J이 위 각 회사들의 이사가 되었으며, 그 후 G에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재위탁하였고, 이에 따라 G는 자금을 투자하여 불가마 등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시설을 개보수하면서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였다.

라. 그런데 F이 G의 수입과 지출, 운용내역 등을 협의체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아 2011년에 협의체 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협의체는 2013. 5. 6.경 위원회를 열어 주민편익시설을 협의체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 후 협의체 위원장이 된 I는 2013. 7. 26.경 G에 위탁 운영관리 사업 종료를 통보하였고, 당시 G의 대표이사이던 K은 이를 수용하여 협의체에 주민편익시설을 인도하고 2013. 7. 31. G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마. 한편 C마을 사람이 아닌 외부투자자로서 G 및 H에 합계 3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원고는 위와 같이 협의체가 주민편익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K이 협조한 것과 관련하여 I, K을 형사 고소하여 I, K이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다시 I, K을 상대로 임무해태 또는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그 외에도 원고는 전주시청이나 전주시의원에 협의체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바. 협의체가 주민편익시설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2017년경까지는 수익금이 적어 주민들에게 돈이 분배된 적이 없으나 2018. 2.경 수익금 6억 76,685,363원에 대한 분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시 협의체 회장인 I이 위 수익금으로 G 및 H의 개인투자자들(원고를 비롯한 C마을 주민 17명)에게 원금과 이자를 먼저 반환하고 남은 금액을 41가구에 균등 분배하는 안건을 건의하여 그것이 정기총회 안건으로 채택되었다. 2018. 3. 2. 개최된 피고 정기총회에서 피고 회원이 아닌 원고가 피고 회장 L의 양해 하에 주민들 앞에서 ‘최소한 투자원금이라도 돌려주면 좋겠다. 돌려주면 그 돈 중 일부로 발전회에 기금도 내고, 형사고소 등으로 힘들었던 I, K에게 위로금도 전달할 계획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위 안건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하여 참석주민이 아무도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사. 정기총회 이후 원고는 2018. 3. 12. 협의체 사무실에서 G 및 H에 대한 투자원금 및 이자 2억 8,750만 원을 받으면, 위 회사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이에 대한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으며, 그동안 민원제기에 대한 피해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에 기금 3,000만 원, I, K에게 각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정기총회 및 위 약정서에 따라 위 수익금에서 원고에게 1억 5,750만 원(2억 8,750만 원 - 3,000만 원 - 1억 원)을 지급하고, I, K에게 각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아. 그런데 원고에게 수익금을 분배한 것을 문제 삼은 마을 주민 일부가 원고와 L, I, K이 부정한 청탁을 이유로 임무에 위배하여 수익금을 분배하였다며 형사고소를 하였고, 원고 등은 업무상 배임죄, 배임증재 또는 배임수재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위와 같은 수익금 배분이 원고의 민원해결을 위한 필요성 등으로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 집행한 것으로 업무에 위배되거나 부정한 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요구하는 금액을 납입하면 원고를 피고 회원으로 인정하여 준다고 하여 이를 조건으로 피고에게 3,000만 원, I과 K에 각 5,000만 원씩을 기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를

회원으로 가입시켜주지 않고 있다. 원고가 피고 등에 지급한 1억 3,000만 원은 부담부 증여계약에 해당하나 피고가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그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 발전회 정관(갑 제1호증)은 제6조(회원의 자격)에서, 원칙적으로 피고 회원은 2004. 1. 18. 피고 회칙을 개정하는 전날 C마을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가옥주로서 실재 거주하는 가옥주를 회원으로 하고 세입자나 이후 이주해 오는 자는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제1호)고 정하고 있으나, 그 밖에 ‘회원의 가입은 피고 발전회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납입하고 정기총회에서 총회원 2/3찬성 가결로 가입시킨다(제3호)’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도 위 3호의 요건을 갖추면 피고 회원이 될 수는 있다.

나. 그러나 앞서 인용한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3. 12. 체결된 약정서에 원고 주장의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원고는 당초 G와 H의 폐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원고는 피고 회원이 아니어서 수익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각종 소송과 민원 제기를 종결시키기 위하여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원고 스스로 수익금을 지급받으면 그 중 일부를 발전회 기금과 I, K에 대한 위로금 등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처럼 피고가 원고를 회원으로 인정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위로금 등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은영